

하도급 관리 내부심의위원회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2.1 구성내부심의위원회는 회사의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2.2 위원장 및 간사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하도급 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매팀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 : 하도급 구매담당임원

위 원 : 구매팀장 또는 기술 또는 품질 등 하도급 관련 팀장

간 사 : 구매팀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3.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3.1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

3.2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

3.3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 보장

3.4 계약금액 2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전 심의

※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하도급 관리 내부심의위원회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 4.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4.1 내부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결의할 수 있다.

4.2 내부심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4.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4.5 회사의 하도급 및 구매관련 부서는 가격결정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한다.

4.6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 4.7 내부심의위원회 실시

4.7.1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심의한다.

4.7.2 내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 결정한다.

4.7.3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 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4.7.4 재심의 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4.8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4.9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문서보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하도급 관리 내부심의위원회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하도급 개별계약 적법성 심의 Check Sheet

현장명(Code No)	공중(품명)	심의 일자	심의 위원		시정내용
			적합	부적합	
심의 항목	주요 심의 내용	심의			
서면 계약서 교부	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의무(계약금액, 위탁일 위탁 내용, 납품일/장소, 대금지급방법, 지급일, 검사방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량발주를 전제로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대금을 정하지 않은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 관리 내부심의위원회 규정	관리부서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구매팀	1	2014.04.01

물품 등의 강제 구매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